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연 월 일	2021. . .

법 제 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공인자격 취득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민간 자격증의 필수 기재 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자격발급기관을 추가 (안 제6조)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1. 5.18.)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일괄 명칭 변경(제2조의5제2항, 제3조제2항, 제6조의3, 별지 제7호, 제9호, 제11호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격의 발급기관(공인자격관리자)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각각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이후 발급되는 공인자격증부터 적용한다.

민간자격 []공 인 []재공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9개월
신청기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홈페이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인 (재공인) 신청내용	① 등록번호		
	② 종목		③ 등급
	④ 직무내용		
	⑤ 주무부처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대하여 민간자격([]공인·[]재공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자르는 선

민간자격 []공인 []재공인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신청기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종목		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바. 자격의 유효기간 사.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아.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자.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1부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1부 4.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6.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1부 ※ 신청하려는 자격의 종목별로 위의 원본 외에 사본 2부 추가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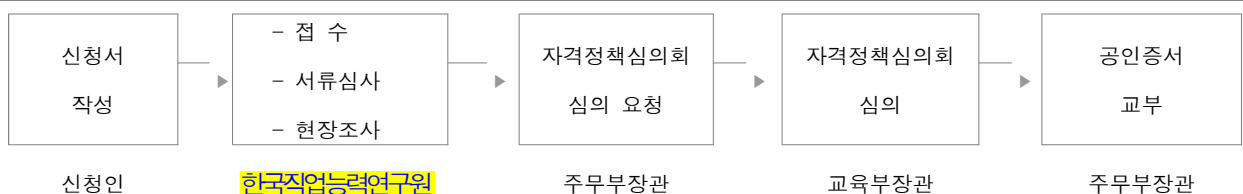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등록관리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② 공인(재공인)을 받으려는 자격의 종목을 적으십시오.
 - ③ 공인을 받으려는 자격의 해당 등급을 모두 적으십시오.(예: 1급, 2급, 3급)
 - ④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을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 ⑤ 자격분야 소관 주무부처를 적으십시오. (참고: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 ⑥ 자격분야가 중복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적으십시오. (참고: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 ※ 신청하려는 자격의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처리절차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홈페이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민간자격 공인사항	① 종목	② 등급	
	직무내용		
	공인번호	공인 주무부처	

「자격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위 공인자격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자르는 선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신청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종목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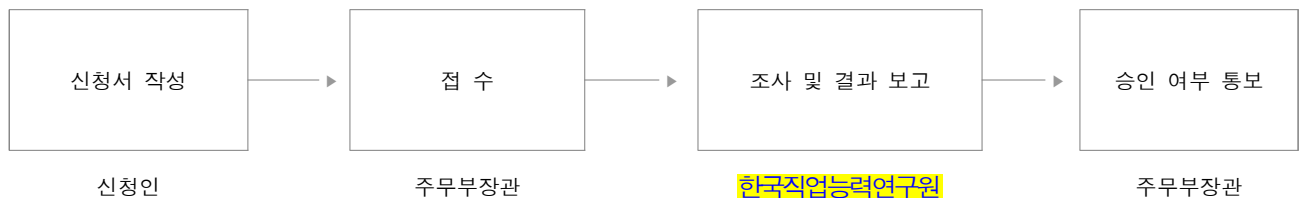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공인증서 원본 및 사본 1부(원본은 확인 후 반납 예정)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부 3.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교육훈련과정 승인을 받으려는 자격의 종목을 적으십시오.
- ② 교육훈련과정 승인을 받으려는 자격의 등급을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홈페이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민간자격	종목		등급	
	직무내용			
공인사항	공인번호		공인 주무부처	
변경승인 신청사항	[] 공인자격의 등급 변경			
	[] 공인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변경			
신청사항	[]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 변경			
	[] 공인자격의 유효기간 변경			
변경승인 신청내용	① 등급			
	② 검정에 관한 사항			
변경승인 신청사유	③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④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변경승인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사유				

「자격기본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자르는 선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신청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종목	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증서 원본 2. 변경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바. 자격의 유효기간 사.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아.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자.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변경사항에 대한 각 사유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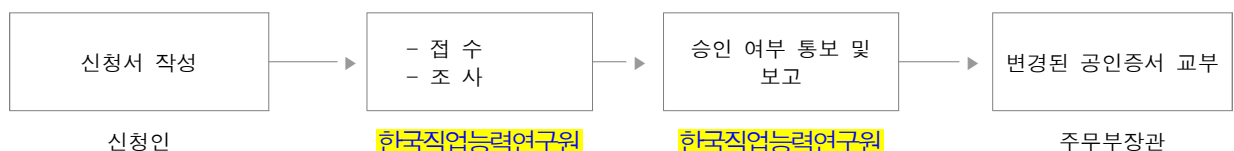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격의 등급을 적으십시오.
- ②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검정 변경 내용을 적으십시오.
- ③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사항을 적으십시오.
- ④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5(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2조의5(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 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 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u>한국직업능력개발 원</u> (이하 “ <u>한국직업능력개발원</u> ” 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 ----- ----- ----- ----- ----- ----- ----- <u>한국직업능력연구원</u> (이하 “ <u>한국직업능력연구원</u>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공인·재공인 신청서) ① (생 략)		제3조(공인·재공인 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 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 를 <u>한국직업능력개발원</u> 의 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u>한국직업능력연구원</u> ----- -----.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u>주민등록번호</u> 4. ~ 6. (생 략) <u><신 설></u>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u>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생년월일</u> 4. ~ 6. (현행과 같음) 7. <u>자격의 발급기관(공인자격관리자)</u>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 ----- ----- ----- ----- ----- <u>한국직업능력연구원</u> ----- -----. 1. ~ 3. (현행과 같음)
--	--